

의안 번호	360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1.

전문위원 강 영 숙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360호
- 다. 제출일자 : 2024. 11. 07.
- 라. 회부일자 : 2024. 11. 15.

2. 제안이유

- 우리구 청소년들에게 상담·긴급구조·자립·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안전망 구축·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석관청소년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분소)』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5.02.28.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1)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42(정릉동 966-1), 4층
- 규 모 : 연면적 235.38㎡ (지상4층)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 석관청소년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분소)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18길 3-9
- 규 모 : 연면적 333.89㎡ (지상1층/지상4층)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화활동사업 운영

3)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다길 8-2(동선동3가 130-3)
- 규 모 : 연면적 283.86㎡ (지하1층/지상3층)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나.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 : 적정

다. 선정방법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사·의결

라. 기존 위탁현황

시설명	위탁법인	위탁기간	종사자수	소요예산 (‘24년 기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교육연구원 (대표 : 정성현)	2025.3.1. ~ 2028.2.28. (3년)	11명	712,215천원 (국 103,386천원, 시 220,540천원, 구 388,289천원)
석관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분소)			5명	181,099천원 (국 66,711천원, 시 66,711천원, 구 47,677천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7명	397,580천원 (국 154,716천원, 시 154,716천원, 구 88,148천원)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5. 검토의견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분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현 위탁자를 대상으로 재계약 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재계약 대상 시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5. 2.28자로 만료되기에 현 위탁자를 대상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임

□ 민간위탁의 적정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분소)’는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1)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4조 제1항2)에서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1)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에 기존 근무인력은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2)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4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있어, 시설 3개소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탁 기간은 해당 조례에서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3항3)에 따라 3년으로 추진하기에 적법함.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는 등 민간 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9.)